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수신자: 양산시 문화관광과 과장님

경 유: 양산시 문화관광과 팀장님, 주무관님

제 목: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에 관하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임기:2021년 7월1일~2023년 6월 30일)으로서 귀 기관에서 지난 5월 30일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한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공개 모집'(양산시 고시 제 2023-151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가.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4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2년 임기가 만료되어도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조례가 명문화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제껏 통상관례(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해 왔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기 전에 위촉직 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물었어야 함에도 일체의 절차 없이 위원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조례)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 이 공고를 보고 담당 주무관(055-392-2545)에게 전화(5월 31일 오전 9시 20분경 / 약 10분간)하여 조례에 의해 연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다음날에는 담당 팀장(055-392-2541)에게도 전화(6월 1일 오후 1시 40분 경/ 약 12분 통화)하여 연임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조례를 준용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연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5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님께서도 담당 팀장이 언급한 "방침상 모든 위촉 위원을 새로하기로 했다"는 의견에 대해 알고 계시고 동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 같은 조례 제11조 1과 2(아래 참고)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기금운용의 관리,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사안으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위촉 심의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해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본 위원은 위원이기 전에 양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오랫동안 예술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산시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실시간 지켜보았으며, 2년간 심의위원을 하며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위촉 위원 중 어느 분은 2년 동안 단 한 번의 출석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기가 자동 연임되는 황당한 상황도 지켜보았습니다. 조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위원의 연임을 담당부서(팀장님과 통화상으로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결정했다고 함)에서 어떤 근거로 제한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4. 위에 언급한 질문(가, 나, 다, 라)에 대한 납득이 될 만한 명확한 답변을 6월 5일(월)까지 문건으로 받고 싶습니다. 양산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참고로 조례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임의 규정이나 임의 방침을 내세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양산시의회는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든 중앙의 문체부 등 주무 부처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붙임 1.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문화예술진흥법. 끝

우리동네작은도서관



관장 허문화(010-2947-4475)

시행 우리동네 2023-03 (2023. 06 02.)

우 50507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6 /

전화 055-375-2681 / janssori@hanmail.net /

공개